

제 호

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

1. 기관명:

2. 주소:

3. 대표자:

주된 사무소:

지방 사무소:

4. 사무소 소재지

해외 사무소:

기타 사무소:

5. 업무범위:

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장관(처장)

직인